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군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됨

○ 일부자구의 수정

○ 적용시한의 명시

4. 주요골자

○ 제2조중 "취득하여 등기하는일"을 "취득 또는 등기하여 직접사용하는"으로 하여 직접사용하는 재산에만 면제

○ 면제세목에 소방공동시설세 추가

5. 검토의견

○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나관리협회, 기타비영리사업자등이 음성나환자의 재활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여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여 등기할때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례로서

○ 1991년 12월 14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에 의하여 시·군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면제대상세목에 추가하였고, 직접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므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개정이므로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충청북도중고자동차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